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23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1 부

판 결

사 건	2016구합55162 취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1. A
	2. B
	3. C
	4. D
피 고	도봉구청장
변 론 종 결	2016. 6. 10.
판 결 선 고	2016. 7. 1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7. 7. 원고들에게 한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23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별지 1 목록의 '취득부동산[1]', '매입시기', '매입금액', '등기일' 및 '지분' 란 기재(이하 같은 목록 '취득부동산'란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와 같이 해당 부동산 중 해당 지분을 해당 매입금액으로 매수하고 해당등기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별지 2 목록의 '취득 지분별' 중 '과세표준'란 기재 해당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공유지분이 아닌 전체 주택을 기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서 1천 분의 20의 세율을 각 적용하여 산출한 별지 3 목록의 '기납부세액'의 '취득세'란 및 '교육세[2]'란 각 기재와 같은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5. 7. 3.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율을 정함에 있어 취득 당시 가액은 각 공유지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원고들의 취득가액은 별지 2 목록의 '취득 지분별' 중 '과세표준'란 기재와 같아서 원고들에게 각 1천분의 10의 각 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별지 2 목록의 '납부하여야 할 세액'란 기재 금액만 납부하면 되고, 원고들의 당초 신고는 과다신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별지 3 목록의 '환급되어야 할 세액'란 기재 금액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각각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7. 7. 원고들의 각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뜻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이라 한다).

1) 위 부동산들은 모두 '서울 도봉구'에 위치하고 있다.
2) 이하에서 별지 2, 3 목록의 '교육세'란은 지방교육세를 의미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23

마.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5. 9. 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1. 25.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과세표준을 의미하는 것이고, 같은 조 제2항은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취득대상이 공유물일 경우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기준은 각 공유지분의 가액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헌법 제36조 제1항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4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 위배 여부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 3. 15. 선고 2000두713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23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관계 규정의 문언, 입법 취지, 법률의 개정 경과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처럼 여러 사람이 하나의 주택 중 각 일부 지분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이 아니라 하나의 주택 전체의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취득세의 표준세율을 정한 후,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각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위와 같이 산정한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취득세를 산정하여야 하고, 지방교육세도 각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여기에 위와 같이 정한 표준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1)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8호, 제2항의 문언을 고려한 해석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하여 과세표준에 대하여 정하고 있고, 제11조 제1항 제8호는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단계별 취득세율을 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2항은 '제1항 제1호, 제2호, 제7호,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인 경우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항에서 정한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문언을 종합해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2항은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및 제11조 제1항의 특별규정으로서 공유물인 부동산의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 방법을 정한 것이라 할 것이지 공유물인 부동산의 세율에 관한 규정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23

즉 제11조 제2항에서 말하는 '각각의 세율'이란 원고들 주장과 달리 공유물의 경우에도 취득원인에 따라 세율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제1항 각 호(제1, 2, 7, 8호)에 의해 결정된 세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 경우 제1항 제8호의 세율 결정시 공유물 지분 가액을 기준으로 할 논리필연적인 이유는 없다. 또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는 문언상 '취득하는 주택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을 결정한다거나, '공유물인 주택의 경우 제11조 제2항에 따른 취득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내용을 들어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취득 당시의 가액'이 과세표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입법 취지를 고려한 해석

(가)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같은 항 제7호 나목에서 정한 1천분의 40이라는 취득세율보다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하되, 일률적인 취득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 9억 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단계적 세율을 각각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지 취득세 부담 완화를 통해 주택거래를 활성화하려는 데에 그치지 아니하고, 소득이나 자산이 많지 않은 계층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취득세 경감의 혜택을 줌으로써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불안정한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위와 같은 취득세 경감의 혜택은 하나의 독립된 주거생활이 이루어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23

는 단위의 가액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부여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의 주택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고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일부분을 2인 이상이 각각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등기만은 편의상 각 구분소유의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로 공유지분등기를 함으로써 공유자들 사이에 상호 명의신탁관계에 있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각 공유자가 소유하는 특정부분에 대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의 취득세 경감비율에 관한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두8295 판결 참조], 주택의 공유자들이 위와 같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나의 주택의 지분을 나누어 취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주택의 가액을 지분별로 나누어 계산한 후 이를 기준으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가 정한 각기 다른 단계별 세율을 적용할 것은 아니다.

그런데 원고들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고,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서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또한 공유물인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각 공유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한다면, 이른바 '지분 쪼개기' 등의 편법을 통하여 이를 악용할 수 있게 되어 앞서 본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입법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

(3)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제2항의 개정 경과를 고려한 해석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는 2013. 12. 26. 지방세법이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이나,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2항은 위 규정의 신설 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23

전부터, 즉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에 취득 부동산의 가액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도록 하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던 시점부터 이미 존재하였던 조항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2항의 입법 취지가 주택거래시 공유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각각의 세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의 개정 경과를 고려한 해석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는 2010. 12. 27. 침체된 주택거래 활성화 및 서민층의 주택 구입에 따른 세 부담 완화를 위하여 취득가격 9억원 이하인 1가구 1주택 등에 한하여 주택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를 50% 경감하기 위하여 신설되었고, 이후 위 규정의 적용을 받는 주택 취득의 시한을 연장하고 취득한 주택의 가액에 따른 취득세 경감 비율 등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으로 계속 개정되어 오다가 2013. 3. 23. 법률 제11716호로 개정된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 이르렀다. 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2013. 1. 1.부터 2013. 6. 30.까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①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면 취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75를, ②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 외의 다주택자가 되면 취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③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하고, 2013. 7. 1.부터 2013. 12. 31.까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23

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면 취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나)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가 2013. 12. 26. 앞서 본 바와 같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와 동일한 취지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는 내용으로 신설되어 구 지방세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2013. 8. 28. 이후 최초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되었다. 또한 구 지방세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3. 8. 28.부터 2013. 12. 31.까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의 적용이 배제되었다. 이러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의 연혁과 그 내용의 유사성 등을 종합해 보면, 2013. 8. 28. 이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 경감에 관한 규율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로 대체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런데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가 신설되기 전 수인이 하나의 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해석되어 왔다[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에 관한 대법원 2013. 7. 25.자 2013두7117 판결 참조]. 따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를 대체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및 이를 인용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2항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와 마찬가지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23

2) 헌법 제36조 제1항 위배 여부

가)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수 있는 자유를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고 혼인과 가족에 대한 제도를 보장한다. 그리고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에 관련되는 공법 및 사법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헌법원리 내지 원칙규범으로서의 성격도 가지는데, 이는 적극적으로는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 혼인과 가족을 지원하고 제삼자에 의한 침해 앞에서 혼인과 가족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과제를 포함하며, 소극적으로는 불이익을 야기하는 제한조치를 통해서 혼인과 가족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포함한다. 한편, 조세법률은 혼인한 자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 외에는 혼인생활 자체에 어떠한 명령이나 금지를 직접적으로 가하지 않는다. 따라서 헌법 제36조 제1항이 보장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이나 혼인과 가족에 대한 제도보장은 조세법률에는 어떠한 법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도출되는 차별금지명령은 조세입법에서 조세부담의 증가라는 경제적 불이익을 통해서 혼인과 가족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러므로 만약 조세법률이 혼인을 그 구성요건으로 삼아서 일정한 법적효과를 결부시키고자 한다면, 혼인한 자를 경제적으로 불리하게 차별취급해서는 안 된다(헌법재판소 2002. 8. 29. 선고 2001헌바82 결정 등 참조).

나) 위 법리를 토대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는 부부 사이에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만을 규율하는 것은 아니고,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는 경우와 주택을 공유하는 모든 경우를 규율하는 것이므로 부부를 다른 공유자들보다 합리적 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23

유 없이 차별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이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 정해진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호제훈

판사 이민구

판사 이정훈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23

별지 1

순번	성명	취득부동산	매입시기	매입금액	등기일	지분	거부처분일
1		[redacted] 대 213.7㎡ 및 위 지상 건물	2013-09-04	620,000,000	2013-10-17	1/2	2015-07-07
2			2013-09-04		2013-10-17	1/2	2015-07-07
3		[redacted] 대 201.7㎡ 및 위 지상 건물	2014-03-23	805,000,000	2014-05-12	1/2	2015-07-07
4			2014-03-23		2014-05-12	1/2	2015-07-07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23

별지 2

순번	성명	주택가액	취득 지분별			납부하여야할 세액		
			비율	과세표준	적용세율	취득세	교육세	합계
1		620,000,000	1/2	310,000,000	10/1,000	3,100,000	310,000	3,410,000
2			1/2	310,000,000	10/1,000	3,100,000	310,000	3,410,000
3		805,000,000	1/2	402,500,000	10/1,000	4,025,000	402,500	4,427,500
4			1/2	402,500,000	10/1,000	4,025,000	402,500	4,427,50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23

별지 3

순번	성명	기납부세액			환급되어야할 세액		
		취득세	교육세	합계	취득세	교육세	합계
1		6,200,000	620,000	6,820,000	3,100,000	310,000	3,410,000
2		6,200,000	620,000	6,820,000	3,100,000	310,000	3,410,000
3		8,050,000	805,000	8,855,000	4,025,000	402,500	4,427,500
4		8,050,000	805,000	8,855,000	4,025,000	402,500	4,427,500
합 계							15,675,00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23

별지 4

관계 법령

▣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4. 삭제
5.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 23
6.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23

로 한다.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 = 취득 지분의 취득 당시의 가액 ×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 / 취득 지분의 시가표준액)

② 제1항 제1호·제2호·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 구 지방세법(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어 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생략)...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4. 삭제
5.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 23
6.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23

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② 제1항 제1호·제2호·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생략)...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취득물건(...생략...)에 대하여 제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12조의 세율(...생략...)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제11조 제1항 제8호의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100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생략)...

부칙 <제12118호, 2013.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제2조(유상거래주택 취득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8월 28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2013년 8월 28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분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도 불구하고 제11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23

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②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17호로 개정되어 2011. 5. 19. 법률 제10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 지방세기본법

제51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23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끝.